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3

심의일자	2017.12.1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은평구 수색동 176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7-34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<p>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</p> 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경관법』 제28조 및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경관·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&lt; 건축 분야 &gt;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지내 통경축 확보에 대한 당초 심의의견(주동 층수, 동수, 배치계획 등 조정)의 반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.</li> <li>○ 105동 11층에서 주동(UNIT)면적 축소로 생기는 자연 발코니 부분의 입면은 경사지붕보다는 평지붕 형태로 처리하여 전체 입면과 조화되도록 검토 바람.</li> <li>○ 북측 주출입구의 원형 회차(정차)공간은 차량이 단지 내부로 진입하게 되어 정주 공간에 불리해 보이므로 Bus bay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.</li> <li>○ 북측 주출입구 차량 정차공간에 면한 102동 1층 세대에 대한 프라이버시 확보 계획이나 지상1층 세대를 필로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.</li> <li>○ 101동 하부 보육시설의 출입구를 버스 정차장 쪽으로 이동하여 101동 주민의 출입동선과 간섭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.</li> <li>○ 105동 승강기 홀의 자연채광 및 환기를 위해 계단실 위치 조정을 검토 바람.</li> <li>○ 경로당 이용 편의를 위해 단지 지반층 레벨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수직동선(승강기)을 확보하기 바람.</li> <li>○ 단위세대 평면에서 주방 면적과 싱크대 길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므로 발코니로 연결되는 문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확장 가능성을 검토 바람.</li> <li>○ 106동 필로티 통로 위에 화분 등 추락에 대비한 낙하물 보호시설의 설치를 검토 바람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7.12.12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3

심의일자	2017.12.1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은평구 수색동 176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7-34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			
<b>&lt; 건축 분야 &gt;(계속)</b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<b>건축계획(계속)</b>			
○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74㎡A형, 74㎡B형, 84㎡B형, 84㎡C형에 대하여 10%, 84㎡A형에 대하여 15% 완화 인정함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<b>구조</b>			
○ 콘크리트 품질 및 내구성 확보와 고강도 철근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강도는 최소 24Mpa 이상을 사용하기 바람.			
○ 절곡 형태 주동(┌)의 접합부는 코어에 의해 분리되거나 연속되는 슬래브의 양이 매우 작으므로 구조안전 및 사용성 측면에서 상세한 검토 및 보강을 검토 바람.			
○ 전이층 구조(전이보, 전이 플레이트, 기둥)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고 배근 상세를 제시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<b>조경</b>			
○ 주동 옥상녹화(최소관리, 무관리형)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단열효과를 검토 바람.			
○ 조경계획에서 조경 면적 및 비율이 상이한 부분을 확인하여 수정 바람.			
○ 식재계획에서 소나무의 근원 직경(30cm)은 한단계 낮은 규격(25cm)으로 권장함.			
○ 실내에 탁구장 또는 당구장 등 운동시설과 어린이 놀이터에 간단한 물놀이 시설(수전) 설치를 권장함.			
<b>&lt; 공통사항 &gt;</b>			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			
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녹색건축 우수(그린2)등급 적용			
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: 주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적용, 비주거 절감기술 적용			
다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주거 4%, 비주거 9% 적용			
라. 공동주택 1차 에너지소비량 : 147.69kWh/m <sup>2</sup> ·y (기준 150kWh/m <sup>2</sup> ·y)			
- 계속 -			

**2017.12.12.**  
**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**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3/3

심의일자	2017.12.1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은평구 수색동 176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7-34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 〈 공통사항 〉(계속)			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.			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<sub>2</sub>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			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			
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			
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			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7.12.12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